

석사학위논문

한국과 몽골의 기업회계기준 비교 연구

2014년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관리전공

엔흐자르갈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홍용식

한국과 몽골의 기업회계기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Mongolian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관리전공

엔흐자르갈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홍용식

한국과 몽골의 기업회계기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Mongolian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위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관리전공

엔흐자르갈

엔흐자르갈의 경영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한국과 몽골의 기업회계기준 비교 연구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관리전공

엔흐자르갈

몽골은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된 1991년부터 한국과의 외교교류가 시작됨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및 투자환경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의 기업회계기준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양국 기업회계기준 간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기업 활동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간의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고 투명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며 경제거래에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돕기 위하여 한국과 몽골 기업회계기준의 재무보고 및 형태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7년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세계적 동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회계정보의 비교 가능성의 제고들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09년까지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고, 2011년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된다.

둘째, 1996년부터 몽골 회계 경영처리 업무를 정부 및 전문기관들이 이행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회계 기본 정책 수립, 심의와 공기관이나 공영기업의

회계 부기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할 업무를 이행한다. 재무부 관할 관청인 1996~2003년도에 “회계부”, 2003~2004년도에는 “회계정책 및 조정국”, 2004년~2006년도에는 “회계정책 및 조정국”, 2006년부터는 “회계감사국”이 몽골 회계부기 및 감독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을 감사하고 있다.

셋째. 한국과 몽골의 재무상태표는 일정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황을 반영해서도 차이가 있다. 자산의 평가, 특히 유형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재평가기준 도입과 손상의 인식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몽골회계기준서는 유형자산의 평가에 대해 원가모형만 적용토록하고 있으며, 손상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평가에 대해 재평가목모형의 도입과 손상의 인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포괄손이익계산서에서는 한국은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을 구분표시 하고 몽골에서는 이런 유시 구분표시가 없다. 또 몽골의 기업주당순이익이 의미가 없으므로 주 당순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한국은 주당순이익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금흐름표는 한국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몽골 기업회계기준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하는 직접법을 사용한다.

여섯째. 한국의 자본변동표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짓지만 몽골이 자본변동표에는 상호출자전환주식, 자본잉여금, 자산평가충당금, 환차익금, 기타 자본,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변동표와 몽골 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변동표의 표기방법이나 내용상에서 따른다.

【 표 목 차 】 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 거래, 판매, 몽골회계, 수입

목 차

제 1 장 서론	1
----------------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

제 2 장 한국 기업회계기준	3
-----------------------	---

제 1 절 한국 회계기준의 제정기관	3
---------------------------	---

제 2 절 한국 회계기준의 제정절차	4
---------------------------	---

제 3 절 한국 회계기준의 발전과정	5
---------------------------	---

1. 회계원칙 도입기(1958~1976)	5
------------------------------	---

2. 회계원칙 발전기(1974~1980)	5
------------------------------	---

3. 회계원칙 안정기(1981~1996)	6
------------------------------	---

4. 회계원칙 국제화(1998~현재)	6
----------------------------	---

제 4 절 주요 각국의 국제회계기준도입 현황	8
--------------------------------	---

1. 미국	8
-------------	---

2. 유럽(EU)	8
-----------------	---

3. 독일	9
-------------	---

4. 일본	9
-------------	---

5. 중국	9
-------------	---

제 5 절 한국의 IFRS 도입현황	10
---------------------------	----

제 3 장 몽골 기업회계기준	12
-----------------------	----

제 1 절 몽골 회계기준의 제정기관	12
---------------------------	----

제 2 절	몽골 회계기준의 감독기관	12
제 3 절	몽골 경제의 특징	13
1.	몽골의 기업현황	15
제 4 절	몽골 회계기준의 발전과정	17
1.	민중혁명 이전(1921년 이전)	17
2.	복식부기법(1924~1963)	17
3.	분개일기장 시스템(1964~1993)	18
4.	회계기준 제정기(1994~2001)	18
5.	회계기준 발전기(2002~현재)	19
제 4 장	한국과 몽골의 기업회계기준 비교 연구결과	21
제 1 절	재무상태표 비교 연구결과	21
1.	재무상태표의 구체적인 비교-자산	27
1.1	유동자산	27
1.2	비유동자산	32
2.	재무상태표의 구체적인 비교-부채	39
3.	재무상태표의 구체적인 비교-자본	45
제 2 절	포괄손익계산서 비교 연구결과	50
제 3 절	현금흐름표 비교 연구결과	59
제 4 절	자본변동표 비교 연구결과	67
제 5 장	결 론	73
【참고문헌】		75
ABSTRACT		77

【 표 목 차 】

[표 2-1] 한국 회계기준원	3
[표 2-2] 한국 회계기준의 제정절차	4
[표 2-3] 한국 회계기준 제정혁	7
[표 2-4] 한국 IFRS도입 현황표	11
[표 3-1] 몽골의 경제주요지표(2007년~2012년)	14
[표 3-2] 몽골의 기업현황(2009년~2011년)	16
[표 4-1] 한국 재무상태표 양식	22
[표 4-2] 몽골 재무상태표 양식	25
[표 4-3] 한국과 몽골의 유동자산 비교	28
[표 4-4] 한국과 몽골의 비유동자산 비교	33
[표 4-5] 한국과 몽골의 부채 비교	40
[표 4-6] 한국과 몽골의 자본 비교	45
[표 4-7] 한국의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51
[표 4-8] 몽골의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55
[표 4-9] 한국의 현금흐름표 양식	60
[표 4-10] 몽골의 현금흐름표 양식	63
[표 4-11] 한국의 자본변동표 양식	68
[표 4-12] 몽골의 자본변동표 양식	6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회계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기록, 정리, 분석하여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가 속하는 사회 환경은 현대사회에서 대부분 국가라는 단위로 구분되어 각 국가의 환경에 따라 회계환경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최근에 세계경제의 통합화 경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회계규정들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각 국가의 고유한 사회 환경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국제회계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각 국가의 고유한 회계규정들이 존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몽골은 1990년대까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있다가 1990년 민주화개혁 시장경제로 전환했다. 이점과 관련하여 회계체제에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고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상황의 변화는 첫째 단계로 회계처리방법, 재무제표의 법치적인 환경을 개발하도록 요구되었다. 이 후에 1993년에 몽골회계법이 제정되었고, “몽골 국내적으로 사용될 기준은 국가 기준이 될 것이며, 이것은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¹⁾ 이 법률에 따라 국내회계체제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고 몽골에 사업하는 기업가들에게 국제표준에 도달하는 기초가 되었다.

한국의 경제는 196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1990년부터 한국과 몽골 수교 후 경제, 문화, 무역, 교육의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 교류는 매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이 그 나라 특유한 사회적 · 경제적 환경, 관습, 법률 등에 따라 형성되는 것처럼 한국과 몽골의 기업회계기준도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왔다. 그러므로 양국 간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한국과 몽골의 경제교류가 활발한 빈번한 오늘날 양국의 기업

1) 몽골의 회계법 제16조

회계기준 차이로 인하여, 기업 활동상 많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기준상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의 기업회계기준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양국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기업 활동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의 기업 활동 활성화를 촉진하고,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고 투명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며, 경제교류에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한국과 몽골의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기업회계기준과 몽골기업회계기준에 대한 관련문헌과 선행 연구 자료들을 정리,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논문의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구성 및 연구 구조를 설명했다.

제 2장에서는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 3장에서는 몽골 기업회계기준을 연구한다.

제 4장에서는 한국과 몽골의 기업회계기준을 비교 연구 한다.

제 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에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제 2 장 한국 기업회계 기준

제 1 절 한국 회계기준의 제정기관

한국회계기준의 제정기관은 한국회계기준원(KAI)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 처리 기준을 만들고, 회계 및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뿐 아니라, 기업 재무보고와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9년 9월에 설립되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000년에 제정된 한국 상장기업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회계기준 처리 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 질의회신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2-1] 한국회계기준원²⁾

구분	사단법인
설립연도	1999년 9월
소재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세브란스빌딩
설립목적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제정, 개정, 해석,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정책 등에 관한 연구
주요활동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제정, 개정, 해석, 회계기준 제정업무 수탁 회계기준의 교육훈련
규모	회원 14개 기관 이사회 회계기준위원회 조사연구실(2004)

2) 왕경아, 「IFRS 도입과 한.중 회계제도에 비교 논문」,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5

제 2 절 한국 회계기준의 제정절차

한국회계기준의 제정절차는 9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과제선정, 2단계 토론회, 3단계 기초안, 4단계 기준위원회 심의, 5단계 공개초안, 6단계 공청회 및 의견조회, 7단계 기준위원회 심의, 8단계 기준서 제정, 9단계 기준서 공표이다.

[표 2-2] 한국회계기준의 제정절차³⁾

과제선정	회계기준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지속해서 검토하여, 회계기준의 제정과 개정 과제를 선정한다.
토론회	한국회계기준원의 조사연구실 또는 외부위탁 연구팀은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연구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작성한다.
기초안	조사연구실은 토론회를 토대로 기초안을 작성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의견을 수렴하며, 내부토론을 거쳐 공개초안 시안을 작성하여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한다.
기준위원회 심의	
공개초안	회계기준위원회는 공개초안 시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초안을 확정·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4~6주)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및 의견조회	
기준위원회 심의	회계기준위원회는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분석하여, 본영 여부를 심의한다.
기준서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정안을 최종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기준서공표	금융위원회의 특별한 수정요구가 없으면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를 공표한다.

3)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 전문」, 2011, p.35

제 3 절 한국 회계기준의 발전과정⁴⁾

한국회계기준의 시작은 고려시대에 “사개송도치부법”을 사용했을 때부터지만 정확하게 회계원칙이 처음으로 성문화되어 발표된 시기는 1958년이다. 한국회계제도의 발전 과정을 도입기(1958년~1976년), 회계제도의 발전기(1974년~1980년), 확립기(1981년~1996년), 국제화기(1998년~현재)로 나눌 수 있다.

1. 회계원칙 도입기(1958년~1976년)

1958년 제정된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 바로 한국 최초의 회계기준이다. 이 회계기준은 기존에 제각기 행해졌던 회계실무를 통일화했고, 질적으로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958년에 회계용어와 재무제표의 작성양식이 통일되었으며 회계처리방법도 점차 개선되었다.

한국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1962년 한국정부는 “상장법”과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자본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투자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1974년, 1975년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과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을 각각 제정하였다. 1976년 7월에 비공개 기업들에 적용되는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을 개정하여 신뢰성 있는 기업회계자료의 공시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2. 회계원칙 발전기(1974년~1980년)

1958년부터 1981년까지 “기업회계원칙”을 적용해왔으며, 1974년부터는 상장법인과 일반법인까지 확대 적용하여 회계원칙을 이원화시켰다. 1974년 대통령령으로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하였다.

4) 왕경아, 「IFRS 도입과 한.중 회계제도에 비교 논문」,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7-8

3. 회계원칙 확립기(1981년~1996년)

한국경제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고속성장을 이룩해 나갔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31일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1981년부터 회계원칙 확립기에 들어섰고, 동년 12월 23일 회계처리를 건실하게 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기존의 이원화 되어있던 회계원칙을 통합하기 위해서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그와 동시에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통제할 목적으로 “회계감사기준”도 제정하였다.

4. 회계원칙 국제화(1998년~현재)

1987년부터 1998년까지 기업회계가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을 9차례 걸쳐서 개정하였다. 1998년 4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기업회계기준” 제정 권리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양하였으며, 동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1999년 한국회계연구원이 창설되었고 동년 12월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제정하였다. 2000년 7월 “주식회사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한국회계연구원은 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수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회계기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1년 3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발표하였다. 2007년 1월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를 제정하였다.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공표하였다.

[표 2-3] 한국 회계기준 제정 연혁 5)

제정기	1958년 6월	재정금융위원회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규칙” 공표
발전기	1974년 7월	대통령령으로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확립기	1981년 12월	증권관리위원회 법률적 성격을 지닌 최초의 법조문 형식의 “기업회계기준” (9장 133조) 제정
	~1996년 12월	미국회계기준(US GAAP) 등을 반영하여 8차례 개정
국제화	1998년 1월	기존 회계기준 제정권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이양
	1998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라는 IMF 와 IBRD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회계기준을 전면개정
	2000년 7월	기존 회계기준 제정을 독립된 민간단체인 회계기준원에 위탁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를 제·개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7년 11월	회계기준원을 국제회계기준 등을 반영하여 28개 기준서를 제정하고,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대체

5) 정우, 「한국과 중국의 회계기준에 대한 비교」, 청주대학교, 2011, p.6

제 4 절 주요 각국의 국제회계기준도입 현황

국제회계기준은 원칙론적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이 강하여 해석에 대한 범위를 넓게 두고 있다. 선택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여 기업의 판단과 경제적 실질이 반영된 회계처리를 수행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를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인 통용 가능성이 높은 기준체계라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110여개국, OECD가입국의 80%가 실행 혹은 전면적인 도입을 진행 중에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은 국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US-GAAP 표명하고 있다. 특히 US-GAAP은 국제회계기준과 대립할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체계 또한 미국의 FASB에 사용하는 KASB를 설립하여 기준을 제정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SEC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US-GAAP 조정 의무화를 삭제하는 방안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의 정합을 위하여 FASB와 IASB가 MOU를 맺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또한 2008년 8월 자국 상장기업에 대한 IFRS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여 2014년부터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2. 유럽(EU)

1999년 EU가 발표한 FSAP(Financial Service Action Plan)에 의하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2005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2002년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의 권고에 따라 대산기업들을 2003년 회계 방침 차이 및 계획, 2004년 금액차이를 발표하게 되었다. 2005년부터 EU 역내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2007년 6월에 유럽증권감독위원회는 EU가입국 이와 제3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3. 독일

독일은 EU 소속국가로서 2005년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의사 결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독일은 EU의 타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제회계기준과의 차이가 큰 국가였으며, 상법이나 세법 및 감독 기관에 대한 보고에서 정보 차이가 존재하는 국가였다.

독일의 기업들이 주도가 되어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진행을 하였으나 최초에 도입 기간을 2~3년으로 예상하였고, 현재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4. 일본

일본은 단계적 접근을 통한 IFRS와의 정합 작업을 진행하기 하였는데 2004년 10월 ASBJ(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일본회계기준위원회)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공동 컨버전스 프로젝트의 개시를 발표하여 2007년 8월 정합 작업 가속화에 합의 하였다. 2008년까지 일본회계기준과 IFRS의 주요 차이를 제거하고, 2011년 6월까지 나머지 차이도 제거할 예정에 있다.

5. 중국

중국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발 빠르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06년 2월에 중국정부가 2007년 개시 재무제표부터 실질적으로 국제회계기준과 합치된 회계기준을 상장기업에 적용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재무성을 2005년 5월부터 IASB와의 검토방안을 합의하여, 2005년 11월부터 공동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2007년부터 상장회사들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IFRS의 기본원칙에 따라 개정하였다. 개념체계에 해당하는 일반 기준서 및 구체적인 회계기준서 38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핵심원칙만 도입하였다. 그로 인하여 유형자산 재평가와 조인트 벤처에 대한 비례연결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제 5 절 한국의 IFRS 도입현황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대표적 차이는 주재무제표의 차이와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차이로 즉, 개별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취득원가의 평가방법을 공정가치로 평가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은 2007년 3월 15일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7년 12월에 K-IFRS(37개 기업회계기준서와 21개 기업회계기준해석서)를 공표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에는 실무 적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기준서 및 해석서에 대한 “실무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와 같이 K-IFRS가 2007년 12월 21일 최초로 제정 공표되고, 2008년 중에도 추가적인 개정에 진행되어 왔던 K-IFRS의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에 대한 연구와 세법에 의한 결산 등에 수반되는 세무조정 영향 및 세법의 개정 방향을 대한 연구도 2007년 하반기 시작되었다. 2009년 상장회사의 자발적인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독려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도입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4] 한국 IFRS도입 현황표⁶⁾

단계	연도	주요내용
도입준비 (2007-2008)	2007년	-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 - 국제회계기준서 본문(해석서 포함) 번역 완료 - 파일럿 테스트 실시
	2008년	- 국제회계기준 실무지침 등 제시 - 관련 법령(외감법 증권거래법) 개정 - 파일럿 테스트 실시 - Best Practice 발표 - 국제회계기준 관련 교육 실시 (회계기준원 중심)
선택적용 (2009-2010)	2009년	- 희망기업 국제회계기준 적용 허용 - 비상장 기업용 간략한 회계처리기준 제정 - 국제회계기준 실무지침 등을 보완 - 국제 회계기준 관련 교육 실시
	2010년	- 희망기업 국제회계기준 적용 허용 - 개별기업 국제회계기준 차이내역 공시 - 국제 회계기준 관련 교육 실시
의무적용 (2011-2013)	2011년	- 모든 상장기업 국제회계기준 적용 -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비상장기준서 적용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분기/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 국제회계기준관련 교육 실시
	2012년	- 국제회계기준 적용사례 및 유의점 분석 - 국제회계기준관련 교육 실시
	2013년	- 모든 상장기업 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 국제회계기준관련 교육 실시

6) 정우, 「한국과 중국의 회계기준에 대한 비교」, 청주대학교, 2011, p.25

제 3 장 몽골 기업회계기준

제 1 절 몽골회계기준의 제정기관

1996년부터 몽골회계 경영처리업무를 정부 및 전문기관들이 이행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회계 기본 정책 수립, 심의와 공기관이나 공영기업의 회계 부기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할 업무를 이행한다. 1996~2003년도에 재무부 관할 관청인 “회계부”, 2004년~2006년도에는 “회계 정책 및 조정국”, 2006년부터는 “회계감사국”이 몽골 회계 부기 및 감독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을 감사하고 있다.⁷⁾

몽골에서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그 위탁을 받은 몽골회계연구원(Mongolian Accounting Institute)이 몽골회계기준위원회(Mongo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MASB)를 설치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 2 절 몽골회계기준의 감독기관

몽골의 자본시장 감독기관은 SAB(State Auditing Board)이다. SAB는 금융감독기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 감독
2. 자본시장 감독
3. 회계감독 등이다

7) 몽골의 회계감회계감사국은 회계 부기 규정 및 감사 관한 업무를 총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다

제 3 절 몽골 경제의 특징

몽골은 아시아의 동북쪽,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44개의 세계 내륙국 중에 가장 큰 나라이다. 몽골은 한국의 15.9배에 광대한 영토(156만 7천Km²)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이다. 2013년 인구 통계로 291만7천 명이였으며, 인구밀도가 2명/Km²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밀도가 가장 낮은 상황이다. 이는 몽골의 발전을 가로막은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인구의 60%는 도시에, 40%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목생활을 하고 있다. 몽골은 구리, 몰리브덴, 석탄, 금, 우라늄, 텅스텐 등 다양한 종류의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세계8대 자원부국이며, 특히 구리를 중심으로 한 금속광물은 몽골 최대의 외화 수입원이지만, 자원개발 주도권은 기술과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⁸⁾

몽골은 전통적으로 유목생활에 기초한 유목민의 전통과 문화가 뿌리 깊으며, 현재도 유목업이 최대 산업이다. 유목업이 가축 생산가공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식량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유목업이 또 관광자원으로서도 중요하다.

1990초반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붕괴의 영향으로 계획 경제체제로부터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약 20년이 지났다. 시장 경제체제 전환이후 몽골경제 발전단계를 체제 전환발전기(1990년~1995년), 경제 구조 조정기(1996년~1999년), 거시경제 안정기(2000년 이후)라고 구분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나온 정보에 의하면 2013년 구리-금(Oyu-Tolgoi)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몽골의 탄광산업이 증가하여, 2013년~2016년 경제성장률은 평균 14%에 이르게 될 것이며, 2020년에는 연간 4천만톤, 2040년에는 2억4천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8)사랑게렐, 「몽골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관한 연구 논문」,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17-18

[표 3-1] 몽골의 경제주요지표(2007년~2012년)

연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인구	백만명	2,632	2,683	2,735	2,756	2,753	2,875
GDP액	억달러	45.9	65.6	65.9	84.1	108.3	139.0
1인당	달러	1,486	1,973	2,081	2,350	3,935	4,834
GDP 성장률	%	9.9	8.9	-1.3	6.4	17.3	12.3

자료: 몽골 중앙은행(www.mongolbank.mn)

2007년~2012년 사이에 몽골 경제 주요 지표이다. 몽골은 경제 전환기에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계속되었으나, 1995년부터는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2008년 하반기부터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총 GDP는 65.9억 달러, 1인당 GDP는 2,081달러이다. 2010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총 GDP는 84.1억 달러, 1인당 GDP는 2,350달러로 증가했다.

2008년 말 기준 GDP 성장률은 8.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서비스 산업(6.5%), 농업(1.6%), 제조업(0.8%)등 산업 전반의 성장에 기인한 것이다. 2008년 하반기에 있었던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말 기준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3%로 하락하는데, 이는 소·도매업, 자동차, 정비, 가전제품, 금융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성장률 하락 때문이다.

2011년 GDP 성장률은 17.3%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비스산업(42.5%), 정제산업(16%), 건설업(14.3%), 광산업(8.7%)의 증가가 GDP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총 GDP는 139억 달러, 1인당 GDP는 4,834달러이다. GDP 성장률은 12.3%로 증가하였다. 지난 년에 비교하면 서비스산업(44.9%), 농업(21.3%), 건설업(25.6%), 문화산업(30.5%), 제조업(25.7%)을 각각 높아졌다.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의 14.2%라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중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1. 몽골의 기업현황

몽골의 기업 밀집도는 지리적 위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행정, 지리적 요인이 있겠지만, 인구 유입과 인구 밀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최근 3년 몽골 법인등기소에 등록된 기업 현황을 연도별,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 기준으로 보면 등록된 기업의 수는 67,409개이며, 이 중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수는 48,086로 그 비율은 71.3%이다. 기업의 수가 많은 업종은 소·도매업, 자동차 정비, 가전제품이며, 2011년 기준 26,504개 업체로 전체의 39.3%에 달한다.

[표 3-2] 몽골의 기업현황(2009년~2011년)

업종	2009	2010	2011
농업, 수산업, 임업	2,974 (4.5)	3,170 (4.3)	3,514 (5.2)
광업	722 (1.2)	808 (1.0)	513 (0.8)
제조업	4,510 (7.1)	4,912 (6.7)	5,853 (8.6)
전기, 가스, 수도공급	280 (0.4)	267 (0.3)	239 (0.3)
건설	2,611 (4.0)	3,057 (4.3)	4,226 (6.3)
소·도매업, 자동차 정비, 가전제품	28,685 (44.5)	36,297 (49.1)	26,504 (39.3)
호텔, 식당	2,155 (3.3)	2,228 (3.0)	2,344 (3.4)
운송, 창고, 통신	2,157 (3.3)	2,344 (3.2)	3,182 (4.7)
금융서비스업	1,859 (2.9)	1,208 (1.7)	2,167 (3.2)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업	4,481 (7.0)	5,000 (6.8)	6,543 (9.7)
행정 및 안보, 국방 및 사회보장	1,594 (2.5)	1,662 (2.2)	1,428 (2.1)
교육업	2,396 (3.7)	2,528 (3.4)	3,016 (4.4)
의료 및 사회 복지	2,636 (4.0)	2,678 (3.6)	2,770 (4.2)
기타 공공 및 개인 서비스	7,535 (11.7)	7,654 (10.3)	5,093 (7.5)
기타	6 (0.009)	9 (0.009)	17 (0.02)
총계	64,574	73,822	67,409

자료: 몽골중앙은행(www.mongolbank.mn)

제 4 절 몽골회계기준의 발전과정⁹⁾

회계제도가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발전해 왔듯이 몽골에 회계기준 또한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하며 발전해 왔다.

1. 민중혁명 이전 (1921년 이전)

민중혁명 전 봉건사회시대에 몽골에서는 물물교환, 세금제도, 국가 수입거래의 가치척도가 뚜렷하지 않았다. 대부분 국민들은 문맹이었으며, 경제활동의 주축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회계기록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한 기록이 당시의 회계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몽골의 사회·경제 대부분 분야의 기원과 발달은 민중혁명 성공 후 또는 1921년부터라고 말하지만 몽골 회계기록의 시작은 1911년 Bogd 왕의 정부에 기초 5부처를 세운 후로 부터 볼 수 있다. 이 때 회계기록은 국가의 기금을 전체적으로 통일 기록하고 총무, 사찰(temple) 자산, 금융자본을 내용으로 했다.

2. 복식부기법 (1924년~1963년)

1921년에 민중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재무부, 구소련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1923년~1924년 사이에 이태리식 복식부기 시스템을 도입할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 전문 인력들이 가장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1924년에 재무부 산하에 “경제대학교”를 설립하였다.

1924년~1963년 사이에 몽골은 복식부기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 때 재무부 소속 통계청에서 발행된 회계 증빙근거 문서 서식대로 증빙을 근거로 분개를 함으로써, 시산표에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곤 하였다. 통계청에서 예산 기구와 중소기업이 기록하는 회계문서 서식 수를 결정하고 있다. 그 당시에 증빙문서 서식종류가 상당히 많았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였다.

9) 투르몽흐 미그마르수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몽골회계기준의 비교연구 논문」,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17-18

3. 분개일기장 시스템 (1964년~1993년)

1964년~1993년 사이에서는 회계증빙서류 수가 예전보다 적어져 계정항목 수가 줄어들었으며, 다양한 계정항목에 기업한 분개를 분개일기장 시스템에 전환시켜 몇 가지 증빙서류 서식에 기록하고 총계정원장에 기입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곤 하였다.

1990년 이후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외국 투자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명한 회계정보의 요구를 증대시키고, 기업들의 국제 활동이 진척됨에 따라 국제적인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다른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회계정보가 다른 경우 투자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며, 나아가 국내회계기준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4. 회계기준 제정기 (1993년~2001년)

몽골은 1990년 구소련 붕괴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대외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후 몽골은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자본주의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몽골은 사회주의적 이념과 정책을 물리치고 각종 자본주의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몽골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고, 개선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국제 관련 전문 기구들과 교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1993년에 몽골 국회에서 회계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1997년에 감사법률을 각각 제정하였다. 회계법 제정 시 제16조 (회계기준) 16.1항에서 “회계업무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16.2 항에서 “국제회계기준의 일부분을 몽골회계기준 특정

에 따라 변경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몽골 고유의 특징을 가미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하고 있다.

경제전환기에 기존의 법체계와 재무보고 전통은 IFRS 실무적용 시 상당한 도전과제로 작용하였다. 법체계의 일관성과 관련된 실무적인 도전과제가 존재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집행은 적절한 자원을 가진 집행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환경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관련 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규칙을 정해 주었으므로 회계 및 감사의 새로운 제도가 생겨 발전할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를 양성할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법제도는 경제변화기를 겪어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및 감사제도의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지만, 광범위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유능한 회계사 및 감사인 등 중요 인력이 부족하였으며, 교육 훈련 자료 특히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록된 자료가 없었다.

몽골의 재무제표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몽골 재무부는 세계은행에서 무상 지원을 받아 몽골의 회계시스템을 시장경제 조건에 맞추어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약을 국제 회계감사 회사인 Arthur Andersen 회사와 1993년도에 처음으로 체결하였다.

5. 회계기준 발전기 (2002년~현재)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는 급속하게 변화하여 세계 각국의 경제 및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업 활동의 국제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국가의 자본을 자유롭게 만들어 투자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유치 경쟁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경제 자원은 점점 국경을 뛰어넘어 이동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전세계 국가들은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비교가능하고 신뢰받는 재무제표

를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이 국내 및 해외투자를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 이러한 국제화에 맞추어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지 18년이 된 오늘날 몽골의 회계는 회계 경영 정보, 회계감사, 경영 컨설팅 서비스 등 전반적으로 발전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발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몽골 정부 회계사협회 (Mongolian Accounting Government Association: MONAGA)에서 IFRS가 요구하는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 사항들을 적용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2년도부터 IFRS에서 요구되는 특정 측정방법을 사용할 지침 등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 사항들을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2002년에 253호 재무부장관승인으로 통과된 “국제회계기준 및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지를 위한 개념체계”를 개정하고, 2006년 11월 27일 388호 재무부 장관 승인으로 통과시켜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0월 27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동아시아회계사협회(CAPA)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체기업의 80%~90%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성이 인식되어 회계 및 감사업무에 기업회계기준을 하게 되었다. 몽골 역시 2009년 3분기에 국제회계사협회(IFAC)에서 “국제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게 됐고, 2010년부터 적용하기 되었다. 몽골 정부도 국제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업 분류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분류하였고, 기업국제회계기준을 번역하여, 교육 시스템에 도입하고, 대중에게 홍보하며, 관련된 법률에 개정하는 등 법적인 환경을 정비하게 되었다.

제 4 장 한국과 몽골의 기업회계기준 비교 연구 결과

제 1 절 재무상태표 비교 연구결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는 기존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대차대조표(Balace Sheet; B/S)라 하는 특정시점(회계기간 말)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를 말한다.¹⁰⁾

몽골 공인회계사협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요약 정리하는 재산 목록표와 비슷한 형태의 보고서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몽골 회계기준으로 보았을 때, 재무상태표에 기재되는 사항들이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각 나라의 경제적인 환경이라든가 특징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다. 아래 표에 비교하듯이 기초적인 작성 방법이나 형식은 같지만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10) 정건영, 안홍복, 지현미, 『재무제표분석, 제23호』, 2012.

[표4-1] 한국의 재무상태표 양식¹¹⁾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기업명

(단위 :원)

과목	당기	전기
자산		
유동자산	×××	×××
당좌자산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단기투자자산	×××	×××
매출채권	×××	×××
선급비용	×××	×××
이연법인세자산	×××	×××
.....	×××	×××
재고자산	×××	×××
제품	×××	×××
재공품	×××	×××
원재료	×××	×××
.....	×××	×××
비유동자산	×××	×××
투자자산	×××	×××
투자부동산	×××	×××
장기투자증권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	×××	×××

11) 안경태, 『재무회계』, 2012. p.p12-14

과목	당기	전기
유형자산	× × ×	× × ×
토지	× × ×	× × ×
설비자산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건설중인자산	× × ×	× × ×
.....	× × ×	× × ×
무형자산	× × ×	× × ×
영업권	× × ×	× × ×
산업재산권	× × ×	× × ×
개발비	× × ×	× × ×
.....	× × ×	× × ×
기타비유동자산	× × ×	× × ×
이연법인세자산	× × ×	× × ×
.....	× × ×	× × ×
자산 총계	<u>× × ×</u>	<u>× × ×</u>
부채	× × ×	× × ×
유동부채	× × ×	× × ×
단기차입금	× × ×	× × ×
매입채무	× × ×	× × ×
당기법인세부채	× × ×	× × ×
미지급비용	× × ×	× × ×
이연법인세부채	× × ×	× × ×
.....		
비유동부채	× × ×	× × ×
사채	×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
전환사채	× × ×	× × ×
장기차입금	× × ×	× × ×

과목	당기	전기
퇴직급여충당부채	×××	×××
장기제품보충충당부채	×××	×××
이연법인세부채	×××	×××
.....	×××	×××
부채 총계	<u>×××</u>	<u>×××</u>
자본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	×××
우선주자본금	×××	×××
자본잉여금	×××	×××
주식발행초과금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	×××	×××
품평가손익	×××	×××
.....	×××	×××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	×××
법정적립금	×××	×××
임의적립금	×××	×××
미처분이익잉여금	×××	×××
(또는 미처리결손금)		×××
자본 총계	<u>×××</u>	<u>×××</u>
부채	<u>×××</u>	<u>×××</u>
및 자본 총계		

[표4-2] 몽골의 재무상태표 양식¹²⁾

20..년..월..일

(xvz주식회사)

(단위:투그락)

과목	20..년12월31일	20..년12월31일
자산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수금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료채권		
기타 미수금		
기타 재무자산		
상품		
선급금과 선급비용		
기타 유동자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총계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생물자산		
장기투자 자산		
자연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총계		
자산 총계		

12) 재정 경제부의 해상도 숫자77, 2012. p.47

과목	20..년12월31일	20..년12월31일
부채		
단기부채		
매입채무		
임금 미지급금		
법인세 미지급금		
사회보장보험 및 건강 미지급금		
단기 차입금		
이자 미지급금		
배당금 미지급금		
선수금		
기타 단기부채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과 관련된 부채		
단기부채 총계		
장기부채		
장기 차입금		
충당부채		
이연 법인세부채		
기타 장기부채		
장기부채 총계		
부채 총계		
자본		
국가 자본		
개인 자본		
주식 자본		
상호 출자 전환 주식		

과목	20..년12월31일	20..년12월31일
자본잉여금		
자산재평가충당금		
환차익금		
기타 자본		
이익잉여금		
자본금 총계		
부채와 자본 총계		

1. 재무상태표의 구체적인 비교-자산

자산(asset)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이러한 자산은 대차대조표 작성원칙 중 1년 및 정상 영업주기 기준에 의해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1.1 유동자산

유동자산(current assets)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한국에서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몽골에서는 유동자산이라 기재하고 구분하지 않는다. 한국과 몽골 유동자산의 구성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4-3] 한국과 몽골의 유동자산 비교

한국	몽골
당좌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수금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료채권 기타 미수금 기타 재무자산 상품 선급금과 선급비용 기타 유동자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재고자산 제품 재고품 원재료	

한국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동자산을 다음과 같다.

1.1.1 당좌자산

당좌자산(quick assets)은 유동자산 중에도 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산으로, 현금으로의 전환이 빠른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원재료나 기계설비등을 구입할 때는 현금이 외상으로 거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외상대금을 지급한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의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이 중 현금성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2. 단기투자자산 -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단기매매증권,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해 처분한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보고 기간 말로일 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 등으로 한다.

3. 매출채권 - 일반적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한다.

4. 선급비용 - 미리 지급한 비용 중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비용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한다.

5. 이연법인세자산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세무조정사항 중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세무산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 및 이월세액공제액으로서,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소멸되는 부분으로 한다.

6.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써, 단기적인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가 되고 기간 말로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7. 단기대여금 - 거래처 등에 빌려준 자금으로서, 회수기한이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 하는 금전채권으로 한다.

8. 미수금 - 일반적 영업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

9. 미수수익 -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 금액으로 한다.

10. 선급금 - 상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의 매입을 위해 미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11. 기타의 당좌자산 - 위에서 설명한 항목에 속하지 않는 당좌자산으로 한다.

1.1.2 재고자산¹³⁾

재고자산(inventories)이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보유 중이거나 생산중인 자산 및 생산 또는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와 소모품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재고자산은 다음 같이 세분화 할 수 있다.

1. 제품 - 제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을 말하며, 제품계정에는 제조원가로부터 대체되는 주요제품의 제조원가 이외에도 당해 제품과 관련하여 생산된 부산물 등으로 포함된다.

13) 안경태, 『재무회계, 』, 2012. p.16

2. 재공품 - 재공품이란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공품은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기가 곤란하고, 추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제조하여야만 비로소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3. 상품 - 상품계정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을 말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4. 반제품 - 반제품이란 제품이 둘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될 때 전체 공정 중에서 한 공정의 작업을 마치고 다음 공정으로 이행단계에 있는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을 말한다. 자가 제조한 반제품은 현재 상대로 판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제품과 동일하고, 추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재공품과 유사하다.

5. 원재료 - 원재료는 제품생산에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모든 소비적 재화를 가리키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재료에 범위에 원료, 재료, 매입부분품 및 미착원재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6. 저장품 - 저장품이란 고장용·영업용·사무용으로 쓰이는 소모품 등으로서 결산기말 현재 미사용액을 말한다. 여기서 소모품 등이라 함은 포장재료, 유류, 연료, 기타의 사무용품, 소액의 공구, 기구, 비품 중 취득하였을 때 비용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결산기말 현재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 위에서 설명한 항목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몽골 기업회계기준의 자산¹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유동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출납계 및 은행계좌는 돈, 기간 없는 저축, 3개월 이내 제한하는 특별한 현금성, 현금의 명확 결과에 변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한이 용이한 단기 투자를 말한다.

2. 미수금 - 일반적 영업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

3.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료 채권 -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 종합소득세, 관세 등을 이야기를 한다.

4. 기타 미수금 -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 금액으로 한다.

5. 기타 재무자산 - 3개월부터 1년까지 저축, 단기부채 및 자본의 유가 장치에 있는 종류들과 생산, 서비스에 사용되는 물건, 공급하는 종류들을 말한다.

6. 상품 - 기업의 상품 판매를 위하여 소유한 자산 및 운송 수단 등에 사용되는 재화를 이야기한다.

- 원재료

- 생산중인 자산

- 상품, 제품

- 공급 제품

7. 선급금과 선급비용 - 선급금은 상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의 매입을 위해 미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선급비용은 미리 지급한 비용 중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분류에 의해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한다.

8.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 미래에 판매여 이익이 발생 할 것이고 예상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용역을 이야기한다.

14) 재정 경제부의 해상도 숫자77, 2012. p.p3-5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서의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 원가로 구성된다.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하여, 제조원가는 재무상태 표시일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동비용,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제조 간접비의 배부액을 포함한다.

몽골 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모든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양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한국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고, 몽골은 유동자산으로만 나눈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에도 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산으로 현금으로의 전환도 빠른 자산이다. 몽골 유동자산과 내용상에서 좀 차이가 있다. 한국이 세분화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은 생산, 가공, 유동, 판매를 형성 되어 있다. 몽골은 영업판매 등이 실적의 발생한 실적의 이익을 중요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

1.2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Non current assets)이란 보통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고 있고 몽골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과 몽골 비유동자산의 구성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4-4] 한국과 몽골의 비유동자산 비교

한국	몽골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생물자산 장기투자 자산 자연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토지 설비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비유동자산 이연법인세자산	

한국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유동자산을 다음과 같다.

1.2.1 투자자산¹⁵⁾

투자자산이란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이거나 타회사를 지배, 통제할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는 무관하게 보유하는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유형자산과 구분된다.

1. 투자부동산 - 기업이 투자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혹은 영업활동에의 사용이 중단된 투자,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말한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형자산에 속하는 부동산과는 달리 감가상각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5) 김정태, 『기업회계』, 2012. p.p 120-121

기업은 투자부동산의 보유내용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매도가능증권 -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

3.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가증권이다.

4.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이나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다음의 경우에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보유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여나 영업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중요한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5. 장기대여금 - 상환기환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상인 대여금

6. 장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형화된 금융상품으로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

1.2.2 유형자산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이란¹⁶⁾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및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장기간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1. 토지¹⁷⁾ -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지, 임야, 잡종지 등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고, 매매 목적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2.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 금액 등 포함이다.

3. 건물 - 영업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건물의 부속설비 등 있다.

4. 구축물 - 선거 · 교량 · 안벽 · 부교 · 궤도 · 저수지 · 갯도 · 정원

16) 한진수, 박재완, 김진선, 『IFRS 재무회계』, 2012. p.214

17) 안정태, 『2012 k-IFRS 재무회계』, 2012. p.115

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있다.

5. 기계장치 - 기계장치와 운송설비 및 기타의 부속 설비 등 있다.

6. 기타자산 - 1내지 5이외에 차량 운반구, 선박, 비품, 공기구 등 기타자산 말한다.

한국기업회계기준서는 공정가액으로 규정한다. 몽골기업회계기준서는 증여, 현물출자,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이 없다.

한국기업회계기준서는 취득 후의 지출로써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 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율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몽골기업회계기준서는 감가 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율의 소멸 형태나, 내용 연수의 변동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1.2.3 무형자산¹⁸⁾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1. 영업권 - 영업권이란 기업의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고도의 경영 능력, 독점적 지위, 양질의 고객 관리, 유리한 입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장차 그 기업에 경제적 이익으로 공헌하리라고 기대되는 초과수익률이 있는 경우 그 미래에 영업이익률을 말한다.

2.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이란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독점적 ·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을 말한다.

1) 특허권 - 특허권은 정부가 특수한 기술적인 발명이나 사실에 대하여 그 발명인 및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발명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부여하는 특권이며,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된다.

18) 안경태, 『재무회계, 제 190, 192-197호』, 2009.

2) 실용 실안권 - 실용 실안권이란 특정 고안이 실용 실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의장권 - 의장권이란 특정의 장이 의장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 ·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용 신안권을 미감(美感)을 무시하고 물품의 형상, 구조 등의 고안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의장권을 전적으로 미감(美感)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상표권 - 상표권이란 특정 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 ·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기타 - 그 외에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지상권 등이 무형자산에 포함된다.

3. 개발비 - 개발비란 신제품 ·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1) 연구단계 -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2) 개발 단계 - 개발 단계에서는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상 개발비의 과목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4. 소프트웨어 -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동 구입 비용은 소프트웨어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내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소요된 원가가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1.2.4 기타 비유동자산¹⁹⁾

기타 비유동자산이란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이연법인세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분제외), 보증금, 장기 매출채권, 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1. 이연법인세자산 -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 효과는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고의 확실하며 미래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인식한다. 법인세 절감 효과를 인하여 미래 자산 유출이 감소 때문에 자산으로 계상하게 되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법인세회계”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부분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2. 보증금 - 보증금은 전세권, 전신회화가입권, 임차 보증금 및 영업 보증금 등으로 한다.

3. 장기매출채권 -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1년 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의미한다.

4. 장기 미수금 - 주된 영업활동이외 유형자산 ·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처분 등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1년 이내에 회수가 어려운 회수액을 의미한다.

5. 장기 선급비용 - 계속적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한 비용 중 1년 이후에 비용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몽골 회계기준의 비유동자산²⁰⁾

1. 유형자산 - 비교적 장기간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1)토지

2)건물

3)기계장치

4)교통 수단

19) 안정태, 『재무회계』, 2009, p.p 199-200

20) 재정 경제부의 해상도 숫자77, 2012. p.p 5-9

5)가구, 재산

6)컴퓨터, 기타 수단

7)기타 자산

2. 무형자산 -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형체는 없으나 식별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1) 저작권

2)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3) 소유자

4) 상표권

5) 특허권

6) 토지 소유권

7) 기타 무형자산

3. 생물 자산 - 농업 일하는 기업의 단계 비유동자산에서 관계하고 증가한, 과일, 동물, 식물을 자연자산이라고 말한다.

4. 자연자산 - 자연상태에 존재는 임업 및 광물을 탐사 및 발굴하여 자산화 한 것이다.

5. 이연 법인세 자산 - 이월하여 연기한 법인세란 뜻으로,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상의 항목을 말한다.

6. 기타 비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이연법인세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분제외), 보증금, 장기 매출채권, 미수금 등이 말한다.

한국과 몽골의 비유동자산 비교한 결과 다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비유동자산은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이거나 타회사를 지배, 통제 한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지만 몽골 비유동자산은 투자를 위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서는 공정가액으로 규정하지만 몽골 기업회계기준서는 증여, 현물출자, 기타무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

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한 한국 기업회계기준서는 취득후의 지출로서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율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발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이 비용으로 인식한다. 몽골기업회계기준서는 감사상 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유형자산의 경제적인 효율의 소멸형태나, 내용연수의 변동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2. 재무상태표의 구체적인 비교-부채

부채(liability)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그 이행에 경제적 가치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이러한 부채는 대차대조표 작성 원칙 중 1년 및 정상 영업주기기준에 의해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된다.²¹⁾

21) 안경태, 『재무회계』, 2009. p.222

[표4-5] 한국과 몽골의 부채 비교

한국	몽골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당기법인세부채 미지급비용 이연법인세부채	단기부채 매입채무 임금 미지급금 법인세 미지급금 사회보장보험 및 건강 미지급금 단기 차입금 이자 미지급금 배당금 미지급금 선수금 기타 단기부채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과 관련된 부채
비유동부채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전환사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	장기부채 장기 차입금 충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 기타 장기부채

한국 회계기준의 부채

2.1 유동부채²²⁾

유동부채란 보고 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 차입금등의 부채로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를 포함한다.

2.1.1 단기차입금 - 단기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 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당좌차월이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회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2.1.2 매입채무 - 매입채무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상거래라 함은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2.1.3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관계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말하며, 미지급비용은 발생한 비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미지급비용은 결산정리사항이므로 결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비용항목을 검토하여 미지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계처리해야 한다.

2.1.4 선수금과 예수금 - 선수금은 수주공사·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을 말하며, 예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을 말한다.

2.1.5 미지급법인세 - 미지급법인세란 법인세 및 주민세의 미지급액을 의미한다. 회사는 기중에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기중 납부시 이들을 선급법인세로 처리한 후 결산시 당해 회계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시 선급법인세를 차감한 가액을 미지급법인세로 계산하게 된다.

2.1.6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성장기부채란 비유동부채 중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될 것을 의미한다. 회사는 매 결산일에 모든 비유동부채 특히 차입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상환일을 검토하여 유동성대체를 판단하여야 한다.

22) 안경태, 『K-IFRS 반영 재무회계』, 2010, p. 294

2.1.7 선수수익 - 선수수익은 입금된 영업외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을 의미하여 선수수익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수익으로 대체될 부분은 장기선수수익으로 하여 비유동부채로 계산한다.

2.2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보고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다. 대부분의 비유동부채는 화폐성부채로서 이론적으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총채무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하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기 불조건의 매매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로서 명목상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1 사채 - 사채는 발행자가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표시이 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채무증권이다.

일반적으로 사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지급보증 유무: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 2) 담보유무: 담보부사채, 무담보사채
- 3) 부여된 권리 종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4) 상환 방법: 일시상환사채, 연속상환사채
- 5) 명의 기재여부: 기명식사채, 무기명식사채

2.2.2 전환사채 - 전환사채는 전환사채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를 말한다.

2.2.3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은 말 그대로 차입금 중에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이다.

단기차입금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해야 함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되기 마련이다. 반면, 장기차입금은 원금의 상환을 상당기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설투자 등에 유용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된다.

2.2.4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주인수권’은 유간증권의 소유자가 사전에 약

정된 가격으로 보통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이러한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2.3 충당부채, 우발부채

2.3.1 충당부채 -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당해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의미한다.

2.3.2 우발부채 - 우발부채는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1)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이다.

2)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한 현재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높이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몽골 회계기준의 부채²³⁾

2.5.1 단기 부채-단기 부채는 다음과 같다.

1. 매입채무 -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 및 소요되는 원료와 용역에 대하여 지불하여 할 부채이다.

2. 임금 미지급금 - 노동자들에게 주는 급여, 기타 모양의 급여 부채를 말한다.

3. 법인세 미지급금 - 기업은 법인세, 부과가치세금, 개인의 세금, 기타 세금, 요금, 세金的 재무표 기간 이내 납부하지 않은 금액들을 말한다.

4. 사회보장보험 및 건강 미지급금 - 봉급에서 공제한 또는 관계기관에 내

23) 재정 경제부의 해상도 숫자77, 2012. p.p 9-10

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5. 단기 차입금 - 1년 내에 상환하는 목적으로 차입하는 채무를 말한다.

6. 이자 미지급금 - 단기 및 장기 대부, 장기유가증권 등과 관계하여 지불해야 하는 이자 부채를 말한다.

7. 배당금 미지급금 - 기업 관리의 결정된 주식 소유에 주는 배당기부금을 말한다.

8. 선수금 - 제품, 일을 하기 전에 물건을 사는 손님 또는 주문한 사람에게서 상품 및 재화에 대하여 미리 수취한 금액을 의미한다.

9. 기타 단기부채

10.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과 관련된 부채

2.5.2 장기 부채는 다음과 같다.

1. 장기 차입금 - 1년 이상 기간에 갚는 국내외 근거 관계 측에서 받을 대출액을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충당부채-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발생한 의무로써,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3. 이연 법인세 부채 - 연기하는 법인세란은 세금 부과된 임시 차이 미래 재무표에 내는 수입세금부채를 말한다.

4. 기타 장기부채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몽골 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해 본 결과 표기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다르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은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로 나뉘지만 몽골 기업회계기준은 단기부채와 장기부채로 나뉜다.

3. 재무상태표의 구체적인 비교-자본²⁴⁾

전통적으로 소유주지분이라고 불려온 자본은 오늘날 주식회사가 기업의 대표적인 형태가 됨에 따라 주주지분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주주지분(stokholder's equity)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측정된다.

[표4-6] 한국과 몽골의 자본 비교

한국	몽골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자본 국가 자본 개인 자본 주식 자본 상호 출자 전환 주식 자본잉여금 자산재평가충당금 환차익금 기타 자본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24) 안경태, 『K-IFRS 반영 재무회계』, 2010, p.391

한국 회계기준의 자본

1. 자본금

기업회계성 자본금 계정은 주주의 불입자본 중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자본금으로 확정되는 법정자본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기업내부에 영구히 유보되어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며, 채권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사내에 유보시켜야 하는 자산가액의 최저한도를 표시한다.

1.1 보통주 - 보통주는 기본적인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으로, 기업의 최종위험을 부담하는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는 주식을 말한다.

1.2 우선주 - 우선주는 특정 사항에 관해서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2. 자본잉여금

잉여금이란 회사 자산에 대한 주주청구권이 회사의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으로 표시되는 부분을 말한다.

2.1 주식발행초과금 - 회사의 신주발행시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일치하거나 액면가액 이상 또는 이하일 수가 있다. 이 중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 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주식발행가액 중에서 액면가액을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2.2 감자차익 - 감자차익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킨 때 감소된 자본금액이 주금을 환급한 금액 또는 결손의 보전을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2.3 기타자본잉여금

1)자기주식처분이익 -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2)재평가적립금 - 회사가 구입한 유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취득원가로 계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계상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해당 자산의 시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3. 자본조정

자본조정이란 당해 항목의 특성상 소유주지분에 가감되어야 하거나 또는 아직 최종 결과가 미확정된 상태여서 자본의 구성항목 중 어느 것에 가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회계상 자본 총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을 말한다.

3.1 자기 주식 - 자기주식이란 주식회사가 기발행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취득한 주식을 말한다.

3.2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주식 발행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3.3 배당건설이자 - 회사 설립후 정상적인 영업이 시작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는 것을 배당 건설이자라 한다.

3.4 미교부주식배당금 - 주식배당이란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불입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고 이 주식을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지분비율)에 따라서 배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배당을 말한다.

3.5 주식기준보상거래 -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종업원이나 기타 거래 상대방에게 주식이나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지금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거래 유형에 따라 적절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등)을 부여.

2)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보상거래 -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

3) 선택형 주식 기준보상거래 -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4.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포괄손익”은 일정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4.1 매도가능증권평가속익 -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속익은 미실현속익항목으로 보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한다.

4.2 해외사업환산손익 - 해외지점 및 해외사업소의 영업, 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당해 해외지점 및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재무제표는 현행환율법으로 환산한다.

4.3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속익 - 현금흐름위험회피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로서 당해 거래에 따른 미래현금흐름변동을 상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도구에 대한 손익 중 유효한 부분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비유효한 부분은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속익으로 인식한다.

4.4 지분법자본변동 - 지분법자용투자주식 취득 이후 피투자회사에 대한 순자산 지분가액의 변동이 피투자회사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항목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변동한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 변동액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4.5 재평가잉여금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재평가 이익은 재평가잉여금의 계정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재평가잉여금은 당해 자산의 처분시점에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한다.

5.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비유동자산의 처분 및 기타 일시적인 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으로 한 이익 중 배당금의 형태로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상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 1) 법정적립금: 상법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금액

2) 기타 법정적립금: 상법 이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이 있다)

3) 임의적립금: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등이 있다)

5.1 임의적립금 - 임의적립금은 이익준비금과 기타 법정적립금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익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된 적립금을 의미한다.

5.2 미처분이익잉여금 -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적립한 후, 남아 있는 잉여금으로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말한다.

5.3 이익준비금 - 이익준비금은 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강제적으로 기업내부에 유보하여야 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한다.

5.4 기타법정적립금 - 조세특례제한법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처분액을 말한다.

몽골 회계기준의 자본²⁵⁾

1. 자본 - 전통적으로 소유주지분이라고 불려온 자본은 오늘날 주식회사가 기업의 대표적인 형태가 됨에 따라 주주지분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2. 상호 출자 전환 주식 - 회사들은 거래 주식을 돌려 살 때에 구매한 상호 출자 전환 주식으로 재산 혹은 주식 자본 가격이 떨어진다. 상호 출자 전환 주식은 거래 주식수에 들어가고 계산되지만, 거래 중 주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은 거래 중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돌려 사거나, 판매, 거래, 취소하는 당시에 생기는 손해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자산 재평가충당금 - 자산 재평가 부가는 회사가 거래하러 낸 일반 주식과 유력한 권리를 가진 주식 시장 가격은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면 차이는 금액을 더 지불한 자본 통장에 저장해서 등록한다.

4. 환차익금 - 무역들을 통하여 발생한 기업 이익의 결재 수단(통화)을 말

25) 재정 경제부의 해상도 숫자77, 2012. p.11

한다.

5. 기타 자본 - 다른 수입으로 인정하는 수익과 손실을 말한다.

6. 이익잉여금 - 기업의 산산후에 기간 이내 기업에 축적한 잉여손익이 더하기를 말한다.

몽골회계기준에서 자본이란 투자자본과 취득자본을 합친 것이다. 투자자본이란 주주들이 영업활동을 위해 회사에 투자한 총금액이다. 취득자본이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취득한 총수익이다.

재무상태표에서의 자본 항목은 한국은 몽골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통주자본 및 우선주자본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보고하며, 몽골회계기준에서는 자본금을 통틀어서 표시하고 있다.

한국자본은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수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나누어 졌으며, 몽골은 자본으로만 되어있으므로, 한국 자본이 몽골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포괄손익계산서 비교 연구결과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원칙과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의해 작성된다. 발생주의란 실제로 현금의 유출입과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발생하면 그 해의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수익-비용 대응원칙이란 수익에 대응하여 비용도 함께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며, 실제로 현금이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²⁶⁾

26) 정기웅, 김지수, 변송국, 이상학, 『현대 기업재무』, 2010, p.48

[표4-7] 한국의 포괄손익계산서 양식²⁷⁾

1.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

포괄손익계산서

(회사명)

(단위: 원)

	20X1년	20X0년
수익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기타수익		
물류원가		
관리비		
기타비용		
금융원가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계속영업이익		
중단영업손실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매도가능금액자산		
현금흐름위험회피		
자산재평가차익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수익에 대한 지분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법인세 비용차감후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이익		

27) 안정태, 『K-IFRS 반영 재무회계』, 2010, p.p. 70-73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비지배지분 주당이익(단위: 원): 기본 및 희석		
---	--	--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타포괄손이익의 구성요소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세후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20X1년	20X0년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매도가능금융자산 현금흐름위험회피 자산재평가차의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전손익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2.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

손익계산서

(단위: 원)

	20X1년	20X0년
수익		
기타수익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기업이 수행한 용역으로서 자본화되어 있는 부분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종업원급여비용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유형자산손상차손		
기타비용		
금융원가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계속영업이익		
중단영업손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비지배지분		
주당이익(단위: 원):		
기본 및 희석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20X1년	20X1년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매도가능금액자산 현금흐름위험회피 자산재평가차익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수익에 대한 지분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총포괄이익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비지배지분		

[표4-8] 몽골의 포괄손익계산서 양식²⁸⁾

(회사명)

20..년..월..일.. 현재

(단위:투그룩)

계정과목	20..년12월31일	20..년12월31일
1. 매출액		
2. 매출원가		
3. 매출총이익(손실)		
4. 임대수입		
5. 이자수입		
6. 배당 수입		
7. 수수료 수입		
8. 기타 수익		
9. 판매비		
10. 일반관리비		
11. 금융원가		
12. 기타 원가		
13. 외국통화의 환산손익		
14. 자산처분손익		
15. 기타 손익		
16.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17. 법인세비용		
18. 계속영업이익		
19. 중단영업손익		
20. 당기순이익		
21. 기타 포괄손익		
- 자산재평가 차익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기타 포괄손익		
22. 총포괄이익		
23. 주당이익		

28) 재정 경제부의 해상도 숫자77, 2012. p.29

한국 포괄손익계산서에 구성²⁹⁾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포함)=영업이익

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세대상소득)-법인세=당기순손익

1.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생산비용; production cost)을 말하며, 제조업의 제조원가에는 재료비, 노동비 제조경비 등이 포함된다. 제조원가는 기초재고액과 당기제조원가의 합에서 기말재고액을 뺀 값이다.

2. 판매비와 관리비

일정기간 동안 판매활동 및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기간비용; period cost)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기업이 기계 등 유형고정자산을 구입하면 구입비용에 대해 사용기간에 걸쳐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그 자산의 취득가격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4. 영업이익

생산이나 판매 등 기업고유의 영업활동결과로 발생한 이익(또는 손실)을 나타내며, 이자와 세금지급전 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ERIT)이라고도 한다.

5. 경상이익(법인세차감전이익)

영업이익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외이익(이자나 배당 등의 수입)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이자나 배당 등의 지급)을 뺀 값을 나타낸다.

29) 정기웅, 김지수, 변송국, 이상학, 『현대 기업재무』, 2010, p.p. 48-49

몽골회계기준의 포괄손익계산서³⁰⁾

1. 매출액 - 판매한 제품, 서비스 수익, 사업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매출액에는 서비스매출액과 상품매출액이 있다.
2. 매출원가 - 기업의 하는 사업이 과정 관계에서 매출원가가 판매한 기업에 판매하는 제품원가, 생산과 서비스를 사업한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원가를 말한다.
3. 매출총이익(손실)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나뉘면 매출이익이다.
4. 임대 수입 - 임대 자에게 임대를 하는 사람이 자산을 명확한 기간, 명확한 요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말한다.
5. 이자 수입 - 기업은 모든 이자 수입을 말한다.
6. 배당 수입 - 다른 기업에서 받은 배당된 이익을 말한다.
7. 수수료 수입 - 기업의 제품기호, 저작권, 소프트웨어, 또는 정기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받은 돈을 말한다.
8. 기타 수입 - 이외의 다른 수입을 말한다.
9. 판매비 - 매출과 마케팅 원가의 총계를 말한다. 급료, 사회보험료, 광고, 교통, 사명, 보험, 서류, 우편, 무두질한, 기타 원가들을 말한다.
10. 일반관리비 - 급료, 사회보험료, 법인세, 요금, 세금, 사명, 서류, 우편, 전공경호, 교육, 신문 주문, 보험, 전리, 물, 온기, 무두질한, 임대, 경비 경호, 전수, 교통, 연료, 받은 원가, 무형 자산으로 연구원가들을 말한다.
11. 금융원가 - 모든 이자원가, 거리 요금, 거리를 관계한 다른 원가를 말한다.
12. 기타 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금융원가외의 다른 원가를 말한다.
13. 외국통화의 환산손익 -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적절한 환율로 평가하였을 때의 원화금액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14. 자산을 분할 손익
15. 기타 손익 - 이외의 다른 모든 손익을 말한다.
16.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 총계 이익 위에 임대수입, 이자수입, 배당

30) 재정 경제부의 해상도 숫자77, 2012. p.p 12-15

된 이익, 관한 세금수입, 기타수입 더하기, 그들에서 매출과 마케팅원가, 일반적인 관리원가, 재무원가, 기타원가를 나누기, 외국통화의 환율차이 손익, 자산을 계좌에서 나누기 손익, 무형자산을 계좌에서 나누기 손익, 투자를 판매하는 손익, 기타 손익을 더하기(나누기) 세금하기 전에 이익을 말한다.

17. 법인세비용 - 수입의 세금원가는 재무표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8. 계속영업이익 - 세금 후에 손익을 세금하기 전 수입에서 세금을 나눈다.

19. 중단영업손익 - 정지시킨 일을 표현한 자산의 매출액을 허락한 세금 후에 수입을 더한 총계를 말한다.

20. 당기순이익 - 기업이 일정기간에 얻은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은 몫을 말한다.

21. 기타 포괄손익 - 기타 포괄손익은 다음과 같다.

- 자산재평가 차익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기타 포괄손익

22. 총포괄이익 - 재무제표의 이익과 다른 포괄손익을 더한 총계를 말한다.

23. 주당이익 - 기업의 주식 소유한 관계한 이익, 손실의 단위 기간에 부과된 이익을 말한다.

한국의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활동을 크게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계속사업은 다시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영업활동은 다시 생산활동과 판매관리활동으로 구분한 후 활동별로 구간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한국과 몽골은 재무적으로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모든 수익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하고,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하는 등 면에서 공통

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교한 결과 포괄손익계산서의 표기방법이나 내용 상에서 한국회계기준서와 몽골회계기준서가 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포괄손익 계산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포괄손익 계산서로 작성 하고 또 하나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한다. 몽골은 포괄손익계산서로만 작성한다.

제 3 절 현금흐름표 비교 연구결과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란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이다. ³¹⁾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현금흐름표는 이익의 질, 회사의 지급능력, 재무적 신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영자나 일반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1) 신현걸, 취창규, 김현식, 『2011 객권식 재무회계호』, 2011, p. 553

[표4-9] 한국의 현금흐름표 양식³²⁾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1. 직접법

과목	당기	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
매출등 수익활동으로부터의 유입액	× × ×	× × ×
매입 및 종업원에 대한 유출액	× × ×	× × ×
이자수익 유입액	× × ×	× × ×
배당금수익 유입액	× × ×	× × ×
이자비용 유출액	× × ×	× × ×
법인세의 지급	× × ×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
단기투자자산의 처분	× × ×	× × ×
유가증권의 처분	× × ×	× × ×
토지의 처분	× × ×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	× × ×
현금의 단기대여	× × ×	× × ×
단기투자자산의 취득	× × ×	× × ×
유가증권의 취득	× × ×	× × ×
토지의 취득	× × ×	× × ×
개발비의 지급	× ×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	× × ×
사채의 발행	× × ×	× × ×
보통주의 발행	× ×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	× × ×

32) 신현걸, 취창규, 김현식, 『2011 객관식 재무회계』, 2011, p.p. 556-557

과목	당기	전기
단기차입금의 상환	×××	×××
사채의 상환	×××	×××
유상감자	×××	×××
현금의 증가(감소)	×××	×××
기초의 현금	×××	×××
기말의 현금	×××	×××

2. 간접법

과목	당기	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당기순이익(손실)	×××	×××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	×××
감가상각비	×××	×××
퇴직급여	×××	×××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	×××
사채상환이익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
매출채권의 증가(증가)	×××	×××
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
당기법인세부채의(감소)	×××	×××
이연법인세부채의(감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단기투자자산의 처분	×××	×××
유가증권의 처분	×××	×××
토지의 처분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과목	당기	전기
현금의 단기대여	×××	×××
단기투자자산의 취득	×××	×××
유가증권의 취득	×××	×××
토지의 취득	×××	×××
개발비의 지급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사채의 발행	×××	×××
보통주의 발행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사채의 상환	×××	×××
유상감자	×××	×××
현금의 증가(감소)	×××	×××
기초의 현금	×××	×××
기말의 현금	×××	×××

[표4-10] 몽골의 현금흐름표 양식³³⁾

20..년..월..일.. 현재

(회사명)

(단위:투그룩)

	계정과목	20..년12월31일	20..년12월31일
1	영업활동현금흐름		
1.1	현금수입총계(+)		
	제품 매출, 서비스 영업수입액 수수료, 할부 수입액 보험 보상 수입액 법인세 환급액 기타 현금수입		
1.2	현금지출총계(-)		
	임금 지급액 사회보장보험 지급액 원자재 구매대금 사용원가 유출액 이자 비용 유출액 법인세 지급액 보험금 지급액 기타 현금유출액		
1.3	영업활동순현금흐름		
2	투자활동현금흐름		
2.1	현금수입총계(+)		
	장기자산을 처분한 수입액 선급금의 회수 이자 수입액 배당금 수입액		
2.2	현금지출총계(-)		
	무형자산취득 지급액 장기자산을 취득 지급액		

33) 재정 경제부의 해상도 숫자77, 2012, p.31

2.3	투자활동순현금흐름		
3	재무활동현금흐름		
3.1	현금수입총계(+)		
	주식 발행 수입액 사채 발행 수입액 장·단기차입금의 차입		
3.2	현금지출총계(-)		
	사채 상환 지급액 유상감자 지급액 배당금 지급액		
3.3	재무활동순현금흐름		
4	순현금흐름		
5	기초의 현금		
6	기말의 현금		

1.1 한국 영업활동현금흐름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단기순이익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단기순이익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수익 및 비용의 발생분과 가정이나 추정에 의한 원가배분액이 포함되어 있다.

- 1)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 2)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
- 3)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 4)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 5) 보험회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보험금, 연금 및 기타 급부금과 관련되는 현금유입·유출
- 6) 법인세의 납부 또는 환급. 단,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과 명백히 관련되는 것은 제외
- 7)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유출

1.2 투자활동현금흐름

현금흐름표는 조달된 현금을 어떠한 투자활동에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며, 투자활동과 관련된 자산의 감소를 통하여 유입된

현금의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 유형·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자본화된 개발원가와 자가건설 유형자산에 관련된 지출(자본화 차입원가 등) 포함

2) 유형·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3)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현금유출입(현금성자산으로 간주되는 상품이나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에 따른 현금유출입은 제외)

4)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의 지급과 회수(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과 대출채권 관련 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

5) 파생상품계약에 따른 현금유출입. 단, 파생상품계약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그 계약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 거래의 현금흐름과 동일하게 분류

1.3 재무활동 현금흐름

현금흐름표는 회사의 고유한 영업활동(수익창출활동) 이외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내역을 보여준다. 즉 어떠한 재무활동에 의해 현금이 조달되었고, 장기 부채의 상환 등 어떠한 재무활동에 얼마만큼의 현금을 사용하였는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2)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유출

3) 담보·무담보부사채 및 어음의 발행과 기타 장·단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4)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5)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2. 몽골회계기준의 현금흐름표³⁴⁾

현금흐름표는 기초 영업, 투자, 재무영업활동의 수환, 현금흐름순이익 등에 구성된다. 보고때 현금흐름영업활동을 현금흐름표에서 2년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1) 현금흐름을 현금흐름수입, 현금흐름원가를 현금원가에 보인다.
- 2) 기초 영업, 투자, 재무영업의 현금흐름순은 더하기로 총계 현금흐름을 명확하게한다.
- 3) 보고때 현금흐름의 처음 잔액에서 끝 잔액을 나누기 명확한 현금흐름순 이익변화는 현금흐름표에 “순현금흐름순환”의 결과와 같다.
- 4) 현금흐름표를 만들때 직접방법을 사용한다.

한국과 몽골 기업회계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인다. 한국기업회계활동은 직접법과 간접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몽골 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의 현금흐름은 똑같이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각각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을 기재하고 있는 반면에 몽골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만 수익과 지출로 구분해서 기재하고 있고, 나머지는 투자 및 재무활동에 속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의 현금 흐름표 차이점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이한 현금흐름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은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사용하지만 몽골은 영업활동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있다.

34) 재정 경제부의 해상도 숫자77, 2012, p.p 16-18

제4 절 자본변동표 비교 연구결과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기업실체의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업실체와 소유주(주주)간의 거래 내용을 이해하고 소유주에게 귀속될 이익 및 배당가능이익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³⁵⁾

35) 안경태, 『K-IFRS 반영 재무회계』, 2010, p.444

[표4-11] 한국의 자본변동표 양식³⁶⁾

제기××기 20××년×월×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기 20××년×월×부터 20××년×월×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구분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 액	이익 잉여금	총계
20XX.XX.X(보고금 액)	×××	×××	×××	×××	×××	×××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	(×××)	(×××)	(×××)	(×××)
전기오류수정	(×××)	(×××)	(×××)	(×××)	(×××)	(×××)
수정후 자본	×××	×××	×××	×××	×××	×××
연차배당					(×××)	(×××)
처분후 이익잉여금					×××	×××
중간배당					(×××)	(×××)
유상증자(감자)	×××	×××				×××
당기손이익(손실)			(×××)		×××	×××
자기주식 취득				(×××)		(×××)
해외사업환산손익						
20XX.XX.X	×××	×××	×××	×××	×××	×××
20XX.XX.X(보고금 액)	×××	×××	×××	×××	×××	×××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	(×××)	(×××)	(×××)	(×××)
전기오류수정	(×××)	(×××)	(×××)	(×××)	(×××)	(×××)
수정후 이익잉여금					×××	×××
연차배당					(×××)	(×××)
처분후 이익잉여금					×××	×××
중간배당					(×××)	(×××)
유상증자(감자)	×××	×××				×××
당기손이익(손실)			(×××)		×××	×××
자기주식 취득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20XX.XX.X	×××	×××	×××	×××	×××	×××

36) 안경태, 『K-IFRS 반영 재무회계』, 2010, p.4477

[표4-12] 몽골의 자본변동표 양식³⁷⁾

20..년..월..일.. 현재

(회사명)

(단위: 투그룩)

	계정과목	자 본	상 호 출 자 전 환 주 식	자 본 잉 여 금	자 산 재 평 가 가 충 당 금	환 차 익 금	기 타 자 본	이 익 잉 여 금	총 계 이익
1	20..년1월1일 (보고금액)								
2	회계 정책의 변경, 오류수정								
3	수정후 자본								
4	당기 손이익(손실)								
5	기타 포괄손익								
6	자본의 변동								
7	선언된 배당금								
8	재평가 이행 결과								
9	20..년12월31일 잔액								
10	회계 정책의 변경, 오류수정								
11	수정후 자본								
12	당기손이익(손실)								
13	기타 포괄손익								
14	자본의 변동								
15	선언된 배당금								
16	재평가 이행 결과								
17	20..년12월31일 (보고금액)								

37) 재정 경제부의 해상도 숫자⁷⁷, 2012, p.30

4.1 한국 자본변동표의 기본구조³⁸⁾

1. 자본금의 변동 -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와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자본잉여금의 변동 -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 결손금처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자본조정의 변동 -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자기주식

2) 주식할인발행차금

3) 주식선택권

4) 출자전환채무

5)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 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

6) 감자차손

7) 자기주식 처분손실

8) 기타: 1) 내지 7) 외의 원인으로 당기에 발행한 자본조정의 변동으로 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4.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 -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2) 해외사업 환산손익

3)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4) 기타: 1) 내지 3) 외의 원인으로 당기에 발생한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으로 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5. 이익잉여금의 변동 -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2)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손익

3) 연차배당(당기 중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액으로 하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과 기타 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4) 중간배당(당기 중에 이사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액)

38) 안경태, 『K-IFRS 반영 재무회계』, 2010, p.p 445-446

5) 당기순이익

6) 기타: 1) 내지 5) 외의 원인으로 당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하되, 그 금액이 중용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4.2 몽골 자본변동표의 기본구조³⁹⁾

자본변동표에 자본에서 나오는 모든 수정기준을 다음과 같은 2년의 보이다.

1. 자본의 구성 각각이 보고 때의 저금과 끝 잔액은 보고 때 당기 손이익(손실), 기타 포괄손입, 자본변동, 주식 소유자들에 분배한 배당금, 이행한 재평가 부가 등을 자본에 모든 변동을 말한다.

2. 회계 정책의 변경, 오류수정을 이익잉여금의 저금잉여금 각주한다.

3. 보고 때 당기 순이익(손실)의 총계를 축적한 이익(손실)의 각주 잔액 위에 더하기한다.

4. 기타 포괄손익을 구성 각각으로 분해하고 자본 재평가 부가, 환차익금, 자본의 다른 부분의 저금하는 보고 때 잔액 위에 더하기한다.

5. 자본의 변동은 명확하게 보고 때에 더 발생한 주식, 돌려 산 주식, 아니면 분당 조생된 자본에 변동 들을 말한다.

6. 선언된 배당금은 총계의 축적한 이익 계좌의 잔액에서 나누기한다.

7. 자산, 무형자산을 계좌에서 나누기 할때 대한 자산의 재평가 축적한 이익에서 나누기한다.

8. 축적한 이익(손실)은 선포 잔액 위에 보고 때 순이익, 자본변동, 재평가 부가를 더하기, 보고 때 순 손실, 자본에 발생한 나누기 변화 또는 선포한 할당 이익을 나누기 보고 때 축적한 이익(손실)은 끝 잔액을 명확하게 한다.

9. 기타 자본의 저금 잔액 위에 기타 부가 변화를 더하기, 기타 나누기 변화를 나누기하면 자본의 끝 잔액을 명확하게 한다.

한국의 자본변동표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짓지만 몽골이 자본변동표에는 상호출자전환주식, 자본잉

39) 재정 경제부의 해상도 숫자77, 2012, p.13

여금, 자산평가충당금, 환차익금, 기타 자본,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변동표와 몽골 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변동표의 표기방법이나 내용상에서 차이점이 있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몽골 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해 보면서 몽골 경제 특징과 기업현황 또는 한·몽 기업회계기준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한국채택 국제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구체적인 기업회계의 규정들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세계 각국의 기업회계기준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게 발전하여 왔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국제화됨에 따라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하고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은 국제화 추세에 맞추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정은 위해 전면적으로 K-IFRS를 도입하였다.

몽골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지 2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몽골도 해외투자 유치 등 세계 시장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몽골은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된 1991년부터 한국과의 외교교류가 시작됨으로 양국간의 경제협력 및 투자환경 여건이 마련되었다.

각 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이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나라의 법률, 사회 및 경제 환경 특징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본 연구로 한국과 몽골의 재무제표의 분류, 내용 및 특징들을 주로 관찰하고 비교 분석했다. 한국과 몽골의 기업회계기준을 비교를 통하여 연구의 결과는 다음이 요약할 수 있다.

1. 기업회계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외감법에 준거하고, 몽골은 회계법에 의해 제정하고 있다.
2. 한국과 몽골의 재무상태표는 일정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자산의 평가, 특히 유형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재평가기준 도입과 손상의 인식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몽골회계기준서는 유형자산의 평가에 대해 원가모형만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손상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평가에 대해 재평가 모형의 도입과 손상의 인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무형자산의 평가기준에 대하여도 개선한 필요가 있다. 몽골의 회계기준에서는 식별가능성 부분도 불분명하여 모든 무형자산을 유한한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무형자산 평가기준에 대해 식별가능성과 상각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산정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몽골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산정법에 대한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검토가 필요하다.
5. 포괄손이익계산서에서는 한국은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을 구분표시 하고 몽골에서는 이런 구분표시가 없다. 또 몽골의 기업주당순이익이 의미가 없으므로 주당순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한국은 주당순이익을 표시하여야 한다.
6. 현금흐름표는 한국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몽골 기업회계기준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하는 직접법을 사용한다.
7. 한국의 자본변동표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짓지만 몽골이 자본변동표에는 상호출자전환주식, 자본잉여금, 자산재평가충당금, 환차익금, 기타 자본,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변동표와 몽골 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변동표의 표기방법이나 내용상에서 다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몽골기업회계기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경태, 『기업회계』, 신대고시기획, 2012
- 사랑게렐, 「몽골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관한 연구 논문」,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신현걸, 취창규, 김현식, 『2011 객권식 재무회계호』, 2011
- 안경태, 『재무회계』, 삼일인표마인, 2009
- 안경태, 『재무회계』, 삼일인표마인, 2012
- 안경태, 『K-IFRS 반영 재무회계』, 삼일인표마인, 2010
- 왕경아, 「IFRS 도입과 한·중 회계제도에 비교 논문」,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정건영, 안홍복, 지현미, 『재무제표분석』, 2012.
- 정기웅, 김지수, 변송국, 이상학, 『현대 기업재무』, 2010
- 정우, 「한국과 중국의 회계기준에 대한 비교」, 청주대학교, 2011
- 투르몽흐 미그마르수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몽골회계기준의 비교 연구 논문」,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한진수, 박재완, 김진선, 『IFRS 재무회계』, 명경자, 2012
-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 전문」, 2011

2. 국외문헌

몽골의 회계법 제16조

재정 경제부의 해상도 숫자77, 2012

N.Agvaan, 『Accounting of the Law Mongolian』, 2010

Erkesh, 『Accounting』, 2008

2. WebSite

매일경제 <http://news.mk.co.kr/>

몽골공인회계사협회 <http://monicpa.mn/>

몽골국세청 <http://www.mta.mn/>

몽골금융감독원 <http://www.frs.gov.mn/>

몽골금융종합 사이트 <http://sanhuu.mn/>

몽골재무부 <http://www.mof.gov.mn/>

몽골종합 검색 사이트 <http://www.tsahim.net/>

몽골중앙은행 <http://www.mongolbank.mn/>

몽골통계청 <http://www.nso.mn/>

몽골회계종합 사이트 <http://nyabo.mn/>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한국회계기준위원회 <http://www.kasb.or.kr/>

한국공인회계사회 <http://www.kirpa.or.kr/>

한국회계기준위원회 <http://www.kasb.or.kr/>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Mongolian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Enkhjargal

Major in Busines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Since 1991 when its socialist system has turned into the democracy system, Mongolia started its foreign exchange with Korea preparing condi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investing environment. With this need,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Korean and Mongolian standard of entrepreneurial accounting in various terms to identify any difference between the two nations' standards. It promoted activation of mutual entrepreneurial activity by recognizing the problem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that may occur due to a different standard of accounting and by groping for a plan to cope with it. It compared and analyzed the financial report and the form of the standard of entrepreneurial accounting in order to present the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with a reliable and transparent accounting information and to help them be able to make an efficient decision in economic transaction.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result of research.

First,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announced the road map for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 order to actively respond to the global trend of identified accounting standard and to raise the comparability of entrepreneurial accounting information in 2007. It will be applied selectively to companies that wish to appl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until 2009 and obligatorily to all listed companies in 2011.

Second, the government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have implemented Mongolian accounting and management processing services since 1996. Government agencies establish and review basic accounting policies, research a plan of accounting and bookkeeping for public agencies or enterprises, and implement practical tasks.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Finance Ministry established supervision policies and plans of Mongolian accounting and bookkeeping and audited their implementation ; by 'accounting department' from 1996 to 2003, by 'the bureau of accounting policy and coordination' from 2003 to 2004, by 'the bureau of accounting policy and coordination' from 2004 to 2006, by 'the bureau of accounting and audit' since 2006.

Third, Korean and Mongolian financial status are different while reflecting the situation of assets, debt and capital for a fixed accounting period. As for the evaluation of assets, particularly the tangible asse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revaluation criteria and to improve the recognition of damage. Mongolian accounting standards allow only the cost model to the evaluation of the tangible assets, and recognize no damage or loss. Thus,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the tangible asse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odel of revaluation criteria and to improve the recognition of damage.

Fourth, there is a division or mark in Korea for continuing or discontinuing operations in the comprehensive statement of profits and losses, while no such a division or mark in Mongolia. The net income per share shouldn't be calculated as the company's net income per share has no meaning in Mongolia, but it should be marked in South Korea.

Fifth, as for the statement of cash flows, either the direct method or the indirect method might be selected and applied in Korea, but the direct method is used in Mongolia that marks the cash flows due to the operating activities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entrepreneurial accounting.

Lastly, Korean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has the classification of capital, capital surplus, capital adjustments,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 and profit surplus, while Mongolian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has the classification of the mutual debt-for-equity stocks, capital surplus, asset valuation allowance, exchange gain, other capital and profit surplus. In the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of the standard of entrepreneurial accounting, Korea has a method to mark and contents different from that of Mongolia.

